

**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
대상과제 통합 재공고**

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R&D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2월 1일

보건복지부장관 권 덕 철

< 2021년도 보건의료R&D 추진방향 >

◇ **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&D 투자를 '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**
- 기초연구·응용연구를 균형 있게 확대

2021년도 전략목표

공익적 R&D 투자 강화로 국민의 보건의료문제 해결,
첨단유망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 주력산업으로의 도약

**4대 전략별
중점 추진방향**

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	① 감염병 상시화에 대비한 예방·진단·치료기술 등 투자 강화
바이오헬스 첨단 유망기술 육성	② 재생의료 제도 완비 및 중점 지원 ③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 D.NA 기술 연계·활용 투자 ④ 신약·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
공익적 R&D 투자 강화	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R&D 확대 ⑥ 치매·만성질환 등 고부담·난치성 질환 극복 중점 투자
의료현장 연계 R&D 지원	⑦ 병원 인프라를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

I. 통합공고 개요

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'각 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'를 확인 요망

※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구분	공고단위 (RFP명)		지원규모 (과제당)	지원기간	지원대상	과제구성 요건	선정 예정 과제수 (이내)
질환 극복	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	세균·진균 감염병	1,000백만원 이내/년 * 1차년도 750백만원	3년 이내 * 1차년도 9개월	산·학·연·병	총괄과제 ¹⁾	4개
인재 양성	한-스위스 국제 협력		20백만원 이내/년	12개월 이내	산·학·연·병	단독과제 ²⁾ * 자세한 사항은 RFP 참고	10개
	한-스위스 라이프사이언스 교류협력지원		100백만원 이내/년	12개월 이내	산·학·연·병	단독과제 ²⁾ * 자세한 사항은 RFP 참고	1개

¹⁾ 총괄과제는 2개 이상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

²⁾ 단독과제는 1개의 세부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

※ 선정예정 과제수는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시(2020.12.23.) 접수된 과제를 포함

II. 신청요건

□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 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 - * 동시수행 과제수에 제외되는 경우는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 안내되었으며, 그 외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에 포함
 - *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 - *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·세부 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-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의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Ⅲ.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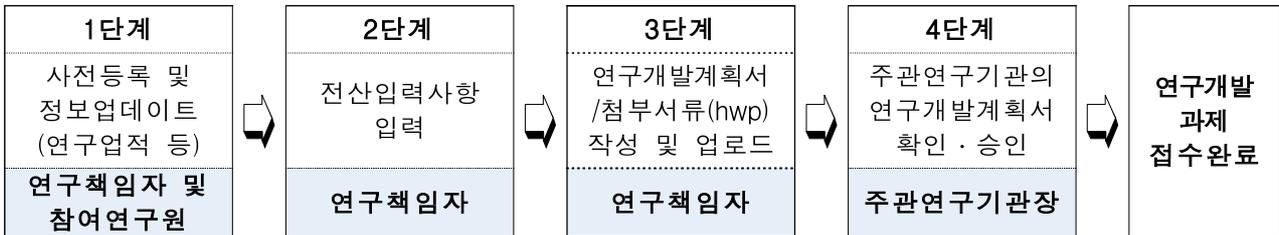
□ 신청방법

-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'R&D지원시스템 바로가기' 클릭

※ 과제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후 '연구자 권한'으로 신청 가능

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
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
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

□ 서류제출기한

- ※ 공고단위(RFP)별 신청마감시간(18:00) 엄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
 - * RFP에 따라 신청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마감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'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 시스템(www.htdream.kr)'에 공지함
- ※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공고단위 (RFP)	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 (전산입력)	주관연구기관 인증 마감일시 (전자 또는 공문제출)
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	세균·진균 감염병	2021. 2. 10.(수) 18 : 00	2021. 2. 10.(수) 18 : 00
한-스위스 국제협력			
한-스위스 라이프사이언스 교류협력지원			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등 적용
 - ※ 관련규정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 → 관련법규에서 확인 가능
 - 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이 변경 될 수 있음

V. 기 타

□ 참여기업 부담금(세부과제별 산정)

- ※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- ※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○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항목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	총 연구개발비 대비 5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25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3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	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	현물 부담액의 50% 이내	현물 부담액의 70% 이내	-
	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, 기술도입비	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% 이내	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% 이내	-

- ※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: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. 다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% 이상으로 함
- ※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: 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
-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인력(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)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 -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
- ※ 단,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, “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(5억원당 1명)” 초과 채용 시 적용
(예 : 5억원 과제 -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, 10억원 과제 -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)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심의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’을 작성·첨부하여 ‘과제평가단’의 심의를 받아야 함
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’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
 -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 과제 중 영리기관에 한해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.
 - ※ 비영리법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면제, 대상과제는 RFP에 표기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」 관련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

※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

VI. 문의처

○ 홈페이지

- 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 (www.mohw.go.kr)

- 전문기관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
(www.htdream.kr)

☞ 문의사항은 **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 질의응답(Q&A)**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○ 공고단위(RFP)별 담당자 안내

- 추후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별도 안내 예정